

## 총회 역사유적 지정 및 관리 규정

### 제1장 총 칙

#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 교회 및 총회와 관련된 역사유적, 유물, 인물 등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유적 지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(유적 · 유물 · 인물 ·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)

##### 1. 유적

- 1)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신앙상, 역사상 가치가 큰 장소 및 건축물
- 2) 산, 들, 도시, 농촌, 섬, 동굴 등 역사적 신앙운동이 발생한 장소, 사람들이 거주한 장소로서 기념물 제단 등 신앙 유물이 있는 곳
- 3)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, 신앙인물이 득도한 곳 또는 신앙 수련장소
- 4) 고분(무덤) 등 향토유적
- 5) 지명(고 지명과 현대 지명)
- 6) 종교의식이 거행된 의미있는 곳

##### 2. 유물

신앙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, 사료적 가치가 큰 물질적 자료

- 1) 비문, 제단, 금석문
- 2) 유물(신앙인의 필적), 사경, 고필, 주련
- 3) 판본류, 활자본류, 한글서적, 한문서적 등 종교, 신앙 관련 기록, 저술, 고문 및 전적
- 4) 제기, 향로, 성찬기, 조각품, 그릇, 제사예배 도구, 법복, 성의, 고퇴
- 5) 인물, 가족, 정당, 조합, 기관(교단 관련), 학교, 단체에 관련된 유형적 자료
- 6) 교단, 노회, 개 교회 관련 서류, 세례인 명부, 공동의회록, 노회록, 총회록 등 원자료

##### 3. 인물 및 단체

- 1) 한국 교회에 공헌한 역사적 인물
- 2) 교단을 창립하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자

- 3) 역사적 인물과 현존 인물로 구분한다.
- 4) 인물과 인물, 인물과 단체, 인물과 시대적 배경으로 구분 기념한다.
- 5) 역사적 인물평가의 기준으로는 종교적, 신앙적 인물로서 다음 사항에 관련된 자
  - (1)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자
  - (2) 항일 독립 운동가(민족해방)
  - (3) 통일 운동가(민족통일)
  - (4) 사회봉사 운동가(사회봉사)
  - (5) 민주화 운동가(자유민권수호)
  - (6)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(공직자)
  - (7) 민족을 위기에서 극복한 자(군인)
  - (8) 국민적 자각 계몽에 힘쓴 자(민중계몽)
  - (9) 사회경제에 큰 발전을 끼친 자(기업인)
  - (10) 시민운동으로 사회민중을 대표한 자(시민운동)
  - (11) 문화, 예술 발전에 공헌한 자(예술가)
  - (12) 지역사회 권익수호에 공헌한 자(향토 운동가)
  - (13) 교회설립에 큰 공로자
  - (14) 전도활동 및 세계선교에 기여한 자
  - (15) 교회, 민족, 지역 발전에 헌신한 자
- 6) 인물 규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- (1) 영역별 인물 선정 기준
    - ① 종교활동(신앙)
    - ② 정치, 사회, 문화, 의료, 교육활동, 향토발전
    - ③ 교단과 관계 깊은 외국인(선교사)
  - (2) 시대적 상징적 인물
    - ① 그 시대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
    - ② 정치, 사회, 경제, 문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
    - ③ 한 시대의 전환점에서 그 시대의 변천 발전에 이바지한 자
    - ④ 한 지역 선교와 교회발전에 이바지한 자
    - ⑤ 그 시대의 사건에 주역으로 활동한 자
    - ⑥ 인류, 민족, 사회, 지역의 평화와 행복에 이바지한 자
    - ⑦ 외국인으로 기장 교단에 헌신한 자와 단체

## 제2장 지정 역사 유적·유물·인물·문화유산

### 제1절 지정 및 고시

#### 제3조(한국 교회 및 총회 유적·유물·인물의 지정)

1. 총회는 총회 역사위원회가 심의 지정한 한국 교회 역사 유적·유물·인물·문화유산을 국가 지정 문화유산, 도 지정 문화유산,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추천하며, 이것을 또한 총회 역사 유적·유물·인물·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.
2. 문화유산 지정 신청은 각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심의하고 그 문화유산의 가치에 따라 국가, 시, 도에 추천하며, 총회에서 인정하는 역사 유적·유물·인물·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#### 제4조(총회 역사 유적·유물·인물·문화유산의 지정)

총회는 총회 역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노회에서 추천된 유형 문화유산, 무형 문화유산, 사적지 및 기념물, 신앙생활 자료 등 중요한 것들을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.

#### 제5조(각 노회의 지정)

노회는 총회 역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각 교회에서 추천된 문화유산을 총회에 추천하며 노회에서 중요 역사 유적 유물 및 신앙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.

#### 제6조(각 교회의 지정)

교회는 총회 역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각 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 역사 유적 유물 및 신앙자료 등을 총회와 노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.

#### 제7조(유적 및 유물의 지정)

총회는 제5조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문화유산을 총회의 유적 및 유물로 지정하고 그 지정 문화유산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# 제8조(지정의 고시 및 통지)

총회는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총회 회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해당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9조(지정서 등의 교부 및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)

#### 1. 지정서 등의 교부

총회는 국가·도시 지정 문화유산, 총회·노회·교회의 문화유산을 지정 결정한 후에는 그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.

#### 2.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

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회보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### 제10조(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)

1. 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이 지정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총회 역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2. 문화유산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보유자로서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총회 역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### 제11조(지정유적·유물의 등급과 구분)

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국가의 문화재법 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을 부치거나 구분할 수 있다.

### 제12조(가지정)

문화유산으로서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총회 역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총회가 노회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중요 문화유산으로 가지정할 수 있다.

## 제2절 관리 및 보호

### 제13조 (관리방법의 지시)

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.

### 제14조 (소유자 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)

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총회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유산을 성실하게 관리 보호해야 한다.

### 제15조(관리)

#### 1.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

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가 지방 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을 지정하여 당해 문화유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#### 2. 총회, 노회, 교회에 의한 관리

총회는 국가, 도, 시, 총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또는 가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하여 화재 또는 훼손 멸실 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 총회, 노회, 교회 등에 의뢰하여 그 안정 보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그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

#### 3. 수리

지정 문화유산의 수리는 그 관리단체가 하여야 한다.

#### 4. 기록작성

지정 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작성 보존토록 한다.

### 제16조 (허가사항)

1.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, 보유자, 관리자는 총회의 승인 없이 반출, 모사 또는 모조할 수 없다.
2. 지정 무형 문화유산을 녹음, 촬영하거나 악보, 대본을 제작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3. 지정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.

#### 제17조 (반출 등의 금지)

문화유산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, 해외 전시, 교류를 목적으로 할 때는 총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.

#### 제18조(허가취소)

총회는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위반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#### 제19조(관리 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)

1.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수리를 총회, 노회 또는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2. 총회는 관리 또는 수리를 위탁받았을 때에 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수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3.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총회장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(행정명령)

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.

1.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상황이 그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, 보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.
2.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를 해임케 하거나 변경케 하는 명령.

**제21조(양도제한)**

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그 지정 문화유산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국가, 사회단체에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신고사항)**

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, 보유자, 관리자, 관리단체는 다음 여러 사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총회의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총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
2.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을 때
3. 지정 문화유산의 소재지, 지명, 지번 등의 변경이 있었을 때
4. 보관장소가 변경하였을 때
5. 멸실, 도난, 훼손되었을 때
6. 반출하거나 반입하였을 때
7. 촬영, 모사, 모조하거나 녹음제작을 완료하였을 때
8. 현상변경 조치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
9. 매도하고자 할 때
10. 보유자가 사망하였을 때

**제23조(보조금)**

지정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를 국고 또는 도비, 시비, 총회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며, 공사의 경우에는 지휘 감독할 수 있다.

**제24조(보조금의 반환)**

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**제25조(손실보상)**

국가관리, 총회관리로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국가 또는 총회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.

**제26조(경비부담)**

국가, 총회, 지방 공공단체는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구역 내에 있는 지정 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관리 보호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**제27조(준용)**

이상의 규정은 가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.

**제3절 공 개**

**제28조(공개)**

총회 역사유적·유물·인물·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부동산에 속하는 유적·유물 지정 문화유산의 공개)**

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총회의 명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30조(동산에 속하는 유적·유물 지정 문화유산의 공개)**

지정 문화유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. 전람회, 전시회 등에 출품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주최 기관은 노회, 총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31조(총회·노회·교회 중요 유적·유물의 공개)**

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여 신앙교육과 선교사업의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공개비용)**

지정 문화유산의 출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 또는 총회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**제33조(급여금 및 보상금)**

지정 문화유산을 출품하였을 때에는 총회는 그들에게 급여금을 지급하며,



멸실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 지정 문화유산의 출품과 공개는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한다.

**제34조(관람료의 징수)**

1.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, 보유자, 관리단체는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2. 관람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총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4절 조 사**

**제35조(보고징수)**

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유자, 보유자, 관리자, 관리단체로부터 지정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환경 보존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.

**제36조(직권에 의한 조사)**

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원으로 하여금 지정 문화유산의 현상, 관리, 수리, 환경 보존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바 먼저 관리 단체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.

**제37조(조사요청)**

지정 문화유산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의 경우는 기관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38조(조사원의 신분)**

조사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
**제39조(준용)**

가지정 문화유산의 경우도 조사의 경우는 이에 준용한다.

### 제3장 개정 및 시행

#### 제40조(개정)

본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면 ‘총회 역사위원회’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#### 제41조(시행)

본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

2002년 9월 제87회 총회 제정  
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